

# 『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조상호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
『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 제 19조는 출자·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.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복지재단의 결산 기한을 사업연도 종료 후 3

개월 이내에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. 또한 『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』에 따르면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이를 반영하여 서울시복지재단의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승인 및 결산서 제출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.

-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  
서울시복지재단의 결산서 제출기한을 ‘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’에서 ‘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’로 변경하였습니다. 또한 서울시복지재단의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  
-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  
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,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  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